

| 신청기관 : 국방부 규제개혁담당관실

독일의 군 사법제도

김종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법학박사(Dr. jur.)

맞춤형
법제정보

외국법제동향

I. 들어가며

오늘날 우리나라의 군 사법제도는 「군사법원법」⁰¹에서 군사법원 및 군검찰 제도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헌법⁰² 제110조 제1항에서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현행 군 사법제도가 미군정, 군부정권의 역사를 거쳐 현대 민주사회에 접어든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즉 군인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군 사법체계의 대응, 군사법원에서 다루어지는 실제 사건의 비특수성과 군 기능과의 비관련성, 군사법원 직무자들의 순환보직구조에서 발생하는 재판의 독립성 우려, 전근대적 특별권력관계 지속으로 인한 군 관련 사건의 축소·은폐 위험 등과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⁰³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⁰⁴에서 헌법 제110조 제1항의 내용을 “비상계엄 선포 시 또는 국외파병 시의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로 개정하면서, 평시 군사법원 제도 및 비상계엄 하의 단심제를 폐지하는

⁰¹ 군사법원법 [시행 2018.3.13.] [법률 제15165호, 2017.12.12., 일부개정].

⁰²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⁰³ 포로체험훈련 사건, 군인의 성범죄·성폭력 사건, 군대와 표현의 자유 사건 등 일련의 군인 인권침해에 관한 사례연구로 이계수·박병욱, “군사법원 폐지를 위한 사례연구”, 『민주법학』 제60호, 2016; 군 사법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로 김용주·오윤성, “군사법 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9권 제2호, 2017; 이계수 외,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5; 김범식,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24권 제1호, 2012; 장영수, “군 사법제도 개혁의 요청과 군사법원의 발전방향”, 『고려법학』 제56호, 2010 참조.

⁰⁴ 대통령,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의안번호 12670(2018.3.26.).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대개혁의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 실천을 위해서는 향후 법령 마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의 국가가 일반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담당하고, 별도의 군사법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아래에서는 개헌으로 인한 군사법제도의 변화시도라는 현재적 상황을 고려하여, 군사법원 설치에 대한 근거를 헌법상 규정에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 독일에 집중하여 관련 입법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한다.

II. 독일 군사법원의 설치에 관한 헌법적 규정 검토

과거 독일제국에서는 우리의 군사법원에 해당하는 군형사법원(Militärstrafgericht)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성립 이후 독일제국 헌법 제106조에서 군형사법원의 관할을 방위사태 시나 군함에 승선한 군인이 일으킨 사건으로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1년 후에 군형사법원이 폐지되었다. 이후 1933년 나치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듬해인 1934년 군사지휘권 중심의 군사법원(Wehrmachtjustiz) 제도가 재도입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연합국통제위원회법률 제34호에 따라 다시 폐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⁰⁵

현재 독일은 우리나라 헌법 제110조 제1항상 군사법원의 설치에 대응하는 규정으로 독일 기본법 제96조 제2항에서 군형사법원(Wehrstrafgericht)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연방은 군대를 위한 군형사법원을 연방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 군형사법원은 방위사태의 경우 및 해외에 파병되거나 군함에 승선하고 있는 군 소속원에 대하여만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 법원은 연방법무부장관의 소관 범위에 속한다. 군형사법원의 전임판사는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⁰⁶ 아래에서는 이 조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05 과거 독일의 군사법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병욱 · 이계수, “독일 군사법제도 재론 -기능주의 군형법, 군형사재판 및 군무법원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7권 제3호, 2016, 170쪽 이하 참조.

06 “Der Bund kann Wehrstrafgerichte für die Streitkräfte als Bundesgerichte errichten. Sie können die Strafgerichtsbarkeit nur im Verteidigungsfalle sowie über Angehörige der Streitkräfte ausüben, die in das Ausland entsandt oder an Bord von Kriegsschiffen eingeschifft sind. Das Nähere regelt ein Bundesgesetz. Diese Gerichte gehören zum Geschäftsbereich des Bundesjustizministers. Ihre hauptamtlichen Richter müssen die Befähigung zum Richteramt haben”.

1. 방위사태 시 군형사법원 설치, 평시 일반법원 관할

독일 기본법 제96조 제2항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의 헌법 제106조와 유사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군형사법원은 전시와 같은 방위(Verteidigung)⁰⁷ 사태의 경우 및 해외파병 군인, 군함에 승선한 군인을 대상으로 재판권을 행사한다. 즉 평시에 발생한 일반형사 사건은 군형사법원이 담당하지 않고 일반형사법원에서 관할하며, 민간인을 대상으로 재판하지도 않는다. 다만 방위사태 발생으로 군형사법원이 설치될 경우, 군 기능 이외로 행사한 군인의 일반형사사건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다수의 견해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⁰⁸

또한 군형사법원은 연방법무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장관의 소관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법원의 인사 및 직무상 감독 권한 등을 가진다. 연방방위부(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장관이 아닌 법무부장관의 업무영역으로 살피는 것은 법치국가적 보호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다.⁰⁹ 방위사태의 경우에도 군에 대한 사법의 독립성을 확립하여 법치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형사법원의 전임판사는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군인 장교 신분의 관할관 등 법무참모가 개입하는 것을 막아 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군사자 휘권 중심으로 작동되었던 나치정권하에서 군형사법원의 그릇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¹⁰

독일 기본법에서 군형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며, 평화유지군 등의 해외파병 및 군함의 운용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제로는 동법원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독일 군형법(Wehrstrafgesetz)¹¹의 내용도 일반법원에서 적용하여 다루고 있다.

⁰⁷ 방위는 군사적 평화유지의 전반적 임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집단적 안전보장(kollektive Sicherheit)을 의미한다. Hillgruber, in: Schmidt-Bleibtreu/Hofmann/Henneke (Hrsg.), GG Kommentar, 14. Aufl. 2017, Art. 24, Rn. 47.

⁰⁸ Jarass/Pieroth,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GG, Kommentar, 2016, Art. 96 Abs. 2.

⁰⁹ Jachmann, GG Art. 96, in: Maunz/Dürig (Hrsg.), Grundgesetz Kommentar, 2015, Rn. 29.

¹⁰ 당시의 군형사법원은 3만 건에 이르는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2만 여명의 군인을 처형한 바 있다. 이재승, “독일의 군입법제”, 『일감법학』 제16호, 2010, 310쪽.

¹¹ Wehrstrafgesetz (WStG)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24. Mai 1974 (BGBl. I S. 1213), das zuletzt durch Artikel 10 Absatz 8 des Gesetzes vom 30. Oktober 2017 (BGBl. I S. 3618) geändert worden ist.

2. 해외파병 군인에 대한 전담법원: 켐프텐 구법원

2013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독일 군인이 해외파병중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파병 전 복무부대나 군인의 독일 내 주소지 또는 거주지의 관할 검찰이 사건을 담당하였다. 해외파병이라는 특수한 상황 및 군인이라는 특수 신분 등 전국의 검찰이 군 형사사건을 해결함에 전문성이 낮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독일 형사소송법 (Strafprozessordnung)상 관련 내용 개정이 있었다. 즉 독일 형사소송법 제11a조¹²는 독일 군인법(Soldatengesetz)에 따른 해외파병 군인은 알고이(Allgäu) 지역의 켐프텐 (Kempten)시의 법원에서 관할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에 켐프텐 검찰청은 군사관 중점 검사부(Schwerpunktstaatsanwaltschaft)를 설치하여 수사지휘를 담당하면서 법적 특수관할권을 기반으로 해당 군인을 기소하고, 이때 독일에서 모든 파병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독일 연방군의 파병지휘사령부(Einsatzführungskommando)와 함께 협력한다.¹³ 이에 따라 켐프텐 구법원(Amtgericht) 형사부의 민간인 판사들이 재판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독일 기본법 제96조 제2항을 우회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각 주의 사법 관할권에 대한 간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 범위에 걸쳐 권한을 가지는 주 검찰청(Landesstaatsanwaltschaft) 같은 기구의 설치는 일반적이지도 않고, 이러한 전문적, 집중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위헌의 여지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독일법관협회(Deutsche Richterbund e. V.)와 독일변호사협회 (Deutsche Anwaltverein e. V.) 등 어떠한 관련 기관 누구도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해 살피지 않은 채, 특별 관할권이 도입되었고,¹⁴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12 "Wird eine Straftat außerhalb des Geltungsbereiches dieses Gesetzes von Soldatinnen oder Soldaten der Bundeswehr in besonderer Auslandsverwendung (§62 Absatz 1 des Soldatengesetzes) begangen, so ist der Gerichtsstand bei dem für die Stadt Kempten zuständigen Gericht begründet".

13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8/9176, S.1.

14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8/9176, S.1.

3. 군인의 징계 및 항소절차를 관掌하는 군무법원 설치

평시 군인에 대한 형사소송절차는 일반형사소송법을 적용하고, 일반형사법원이 군 형사사건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 다만 군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군인의 징계 및 이의제기와 관련된 절차적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군무법원(Truppendifenstgericht)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독일 기본법 제96조 제4항에서 찾을 수 있다.¹⁵ 즉 “연방정부는 연방에 대해 공적 복무관계에 있는 자들에 관한 징계절차와 항소절차 재판을 위한 연방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¹⁶ 현 정부의 개헌(안)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데, 군인의 징계절차와 소청절차와 관련한 특별법원의 설치 인정여부 또는 국방부 차원에서의 징계위원회와 같은 행정적 징계절차 유지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른바 징계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군무법원의 법률적 근거를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III. 군무법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

군무법원과 관련된 법률적 근거로 「군징계법」,¹⁷ 「군무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률」,¹⁸ 「군무법원의 직무범위의 규율 및 군무부 설치를 위한 법률」¹⁹이 있다.

우선 독일에서 군인에 대한 징계는 상급자의 처분에 따르지 않고, 군무법원의 재판 결과에 의한다. 군인에 대한 사법 징계절차와 항소절차는 군징계법 제68조에 따라 군무법원

¹⁵ 군형사법원 이외에 독일 기본법 제96조 등에 근거한 연방법원으로 연방특허법원(Bundespatentgericht), 연방징계법원(Bundesdisziplinargericht) 및 독일법관법(DRiG)에 근거한 연방법관직무법원(Dienstgericht des Bundes), 군징계법(WDO)에 근거한 군무법원(Truppendifenstgericht) 등이 있다.

¹⁶ “Der Bund kann für Personen, die zu ihm in einem öffentlich-rechtlichen Dienstverhältnis stehen, Bundesgerichte zur Entscheidung in Disziplinarverfahren und Beschwerdeverfahren errichten”.

¹⁷ Wehrdisziplinarordnung(WDO) vom 16. August 2001(BGBI. I S. 2093), die zuletzt durch Artikel 6 Absatz 31 des Gesetzes vom 13. April 2017(BGBI. I S. 872) geändert worden ist.

¹⁸ Verordnung über die Errichtung von Truppendifenstgerichten(Errichtungsverordnung, ErrV) vom 16. Mai 2006(BGBI. I S. 1262), die durch § 5 Satz 2 der Verordnung vom 15. August 2012(BGBI. I S. 1714) geändert worden ist.

¹⁹ Verordnung zur Regelung der Dienstbereiche der Truppendifenstgerichte und zur Bildung von Truppendifenkammern (Truppendifenstgerichte-Verordnung, TrDGV) vom 15. August 2012 (BGBI. I S. 1714).

(Truppendifenstgericht)과 연방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각각 1심과 2심 법원에 해당하며, 3심까지 진행되는 일반적공무원의 징계 및 항소절차와는 구별하고 있다.

1. 군무법원과 군무부

군징계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독일 연방방위부는 법령으로 군무법원을 설치하고, 법률관계를 담당할 지역과 업무범위를 정한다. 그리고 동법 동조 제3항에서 군무법원은 연방방위부의 업무영역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군무법원은 뮌스터에 소재하고 있는 북부 군무법원과 뮌헨에 소재하고 있는 남부 군무법원이 있다. 1992년 10월까지는 코블렌츠에 중부 군무법원이 설치되어 있어 총 3개의 군무법원이 있었으나, 당시 군무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체되었다.

군무법원은 군인에 대한 경징계 이외의 사법적 징계(gerichtliche Disziplinarmaßnahmen)와 관련하여서 관여한다. 직무상 징계요구에 따른 경징계의 경우는 징계위원회와 같은 절차를 통해 처리한다. 사법적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는 군인의 징계절차, 벌금, 체포 등 군 징계규칙에 따른 항소절차를 관할하거나, 명령, 전근, 파견 등 군사적 직무와 관련된 항소규칙, 군 징계규칙에 따라 제기된 신청과 관련한 절차, 규정의 정지 및 변경 등에 관한 소송절차 등을 관할한다.

군무법원에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법원 지원 내지 지부의 성격에 해당하는 군무부(Truppendifenstkammer)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북부와 남부 군무법원에 각각 2개씩의 군무부를 두고 있고, 이 외의 지역에 10개의 군무부가 존재한다. 즉 군무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북부 군무법원 관할지역으로 함부르크 2개, 포츠담 2개, 코블렌츠 1개의 군무부를 두고 있고, 남부 군무법원 관할지역으로 코블렌츠 2개, 에어푸르트 2개, 포츠담 1개의 군무부를 두고 있다.

그리고 군무법원의 직무범위의 규율 및 군무부의 설치를 위한 법률 제1조에 따라 북부 군무법원의 관할지역은 베를린주, 브란덴부르크주, 브레멘주, 함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면주, 니더작센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쾰른 관할지역은 제외), 작센-안할트주, 슬레스비히-홀슈타인주이며, 남부 군부법원의 관할지역은 바덴-뷔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 혜센주, 쾤른 관할지역, 라인란트-팔츠주, 자아란드주, 작센주, 튜링엔주이다. 해

외파병 군인의 징계절차는 남부 군무법원에서 관할한다.

군무법원은 재판장과 필요한 수만큼의 판사로 구성되며, 명예판사(ehrenamtlicher Richter)가 참여한다.²⁰ 군무법원의 판사는 타 군무법원에서 배정될 수도 있다. 그리고 모든 군무법원에는 법관회의(Präsidium)가 설치되고, 이 법관회의는 재판장과 4인의 판사로 구성된다. 재판장은 군무법원 군무부의 수장이 되며, 판사 및 공무 관계자 등을 감독한다.

형사상 주요공판절차(Hauptverhandlung)에서 군부무는 1인의 전문법조인인 민간인 판사 재판장(주심)과 2인의 군인 출신 명예판사(배석판사)가 합의하여 재판을 수행한다. 재판장이 전문법조인인 민간인인 이유는 사법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명예판사는 군징계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징계조치대상자로 재판을 받는 군인과 동일한 계급군(Dienstgradgruppe) 중의 1인과 대상자보다 계급이 높은 참모장교(Stabsoffizier) 중의 1인으로 각각 구성된다. 이는 군복무사건에서 군 부대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형사상 주요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징계절차에서는 1인의 재판장이 단독으로 재판한다. 나아가 사안의 중요성과 범위가 큰 경우에는 주요공판절차 결정 이전에 군무부의 재판장은 결정으로 판사 2인을 추가할 수 있다.

²⁰ 독일 법관법(Deutsches Richtergesetz, DRiG) 제1조에서 “사법권은 직업판사와 명예판사에 의해서 행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독일에서 법적인 의미에서의 법관은 양자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 독일 군무법원 체계



2. 연방행정법원의 군사재판부

독일은 1심 군무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으로 연방행정법원에 군사재판부(Wehrdienstsenate)를 설치해 두고, 군사 징계 및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 심리하고 있다. 군징계법 제80조 단 하나의 조문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군사재판부의 판사는 연방법무부에 의해 임명된 판사만 참여하며, 연방행정법원의 법관회의의 제안 또는 동의를 받아 수행하거나 철회될 수 있다. 판결에 방해요소가 있거나 판결을 내릴 수 없을 경우에는, 타 재판부의 판사도 법관회의의 결정을 통해 일시적으로 군사재판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군사재판부는 형사상 주요공판절차 이외의 결정에서 3인의 전문법조인 민간인 출신 판사와 2인의 군인 출신 명예판사가 재판을 한다. 주요공판절차에서는 민간인 출신 판사 3인이 판결한다.

현재 연방행정법원에는 2개의 군사재판부가 있다. 제1군사재판부는 군항소법(Wehrbeschwerdeordnung)에 따른 절차를 주로 담당하고, 제2군사재판부는 군징계법에 따른 절차를 담당한다.

3. 군징계법무관

군징계법 제81조에서 군징계법무관(Wehrdisziplinaranwalt)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법적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군부대에서는 군징계법무관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연방방위부가 군무법원에 당해 기간 동안 공무를 담당할 군징계법무관을 요청한다. 군징계법무관은 독일 법관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지닌 자, 예를 들어 판사자격이 있는 자에 한한다.

군징계법무관의 주된 역할은 사법적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연방방위부에 소속된 군부대의 입장에 대변하는 것이다. 당해 군부대의 요청에 부합하게 수행해야 함과 동시에, 사법적 징계절차에서 선고된 징계처분을 집행할 책임과 권한도 가지고 있다. 즉 군징계법무관이 법률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연방방위부는 2심에 해당하는 연방행정법원에서는 연방군징계법무관을 요청한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연방군징계법무관은 재판정에서의 일련의 절차에서 해당 군부대를 대표한다. 연방군징계법무관은 연방방위부의 소속으로 그 지시에만 구속된다. 해당 군부대가 이전 군징계법무관의 요청에 반하여 절차이행을 거부하고, 직무배제, 연금박탈, 계급강등 등이 예상되는 절차의 경우에는, 해당 군부대는 연방군징계법무관의 요청에 따라 사법적 징계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IV. 맷으며

지금까지 독일의 군 사법제도에 대해 헌법과 군무법원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군 사법제도는 군 기능의 특수성으로 인해 각국이 처한 국제정세 및 안보환경, 국내 사회·정치적 환경에 따라 각각 적합한 제도를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대내외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선진국일수록 군 형사사건은 별도의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형사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며, 독일도 이러한 점에서 같은 모습이다.

과거 독일의 군 사법제도를 짚어볼 때, 군부정권의 영향력이 강할 때에는 군사법원이 설치 및 운영되었으나, 군사자휘권 중심의 군 형사사건 처리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법권 및 재판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평시 군사법원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군부정권의 시기를 지나 경제적·사회적 안정과 함께 정치적으로도 민주화의 길, 민주주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거 시대에 마련된 군사법원 제도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도 우리나라 군사법원에서 처리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일반형사사건으로서 군 조직과 관련한 특수한 범죄는 극미하고, 군법무관 등이 순환적으로 보직을 맡고 있는 구조에서 재판의 독립성이 우려되며, 군대 내 비리나 폭력사건이 축소·은폐될 위험까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방부에서도 평시 항소심(2심)을 맡는 고등군사법원과 군 영창제도를 각각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사법개혁안을 제시하면서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한편으로는 독일과 달리 아직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 우리나라는 휴전 상황이라는 안보 현실이 실제로 엄중한 문제도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과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군사법원 유지 및 폐지에 대하여 깊은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김범식,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24권 제1호, 2012.
- 김용주 · 오윤성, “군사법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9권 제2호, 2017.
- 이계수 외,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5.
- 이계수, “독일 군 사법제도 재론 -기능주의 군형법, 군 형사재판 및 군무법원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7권 제3호, 2016.
- 이계수 · 박병욱, “군사법원 폐지를 위한 사례연구”, 『민주법학』 제60호, 2016.
- 이재승, “독일의 군입법제”, 『일감법학』 제16호, 2010.
- 장영수, “군 사법제도 개혁의 요청과 군사법원의 발전방향”, 『고려법학』 제56호, 2010.
- Jarass/Pieroth,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GG, Kommentar, München, 2016.
- Maunz/Dürig (Hrsg.), Grundgesetz Kommentar, München, 2015.
- Schmidt-Bleibtreu/Hofmann/Henneke (Hrsg.), GG Kommentar, 14. Aufl., Köln, 2017.